

第166回國會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94年3月4日(金)

場所 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代案)
2.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審査된案件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代案).....1面
2.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1面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1面

(21時29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6回國會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代案)
2.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代案과 議事日程 第2項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議事日程 第3項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黃潤鎰委員 나오셔서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潤鎰委員 民主自由黨所屬 黃潤鎰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閉會중이던 지난 1月19日 與·野 交涉團體 代表의 합의에 따라 民主自由黨所屬의 申相式委員, 朴煥太委員과 民主黨所屬의 朴相千委員, 鄭均桓委員, 姜秀淋委員과 本委員 등 6人으로 協商代表가 구성되어 選舉法案, 政治資金에 관한法律案 및 地方自治法案 등 政治關係法案의 협상을 해 왔으며 오늘 협의결

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에 대해서 提案 趣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公職者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은 1993年11月 15日 民主自由黨의 申相式議員外 171人으로부터, 公職選舉法案은 동년 11月25日 民主黨의 趙世衡議員外 95人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었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도 立法意見書가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兩黨에서 발의한 두 法案이 그간 우리의 選舉史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選舉의 과열과 타락, 불법으로 얼룩진 選舉風土를 일신하여 깨끗하고 돈 안드는 選舉를 실현함으로써 공정한 選舉文化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選舉制度는 각종선거를 個別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관계로 제도가 복잡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統合選舉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본취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協商代表들은 兩黨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協議를 한 결과 하나의 選舉法案으로 성안하여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法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별개의 選舉法 體系로 되

어 있던 大統領選舉法, 國會議員選舉法, 地方議會議員選舉法 및 地方自治團體의長選舉法을 하나의 法으로 통합하여 모든 選舉에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둘째, 選舉法違反으로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이나 執行猶豫 및 懲役刑의 선고를 받은 자는 5年 내지 10년간 選舉職을 포함한 모든 公職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選舉期間을 大統領選舉의 경우 23日, 國會議員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舉의 경우 17日, 地方議會議員選舉의 경우 14日로 단축함으로써 選舉經費를 절약토록 하고,

넷째,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日을 법정화하여 大統領選舉는 그 任期滿了日前 70日 이후 첫번째 목요일, 國會議員 選舉는 그 任期滿了日前 50日 이후 첫번째 목요일,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는 그 任期滿了日前 60日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自治區·市·郡·議會議員과 長의 選舉에서도 政黨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選舉運動 規制方法을 包括的 制限, 禁止方式에서 個別的 制限·禁止方式으로 전환하여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일곱째, 선거운동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되, 소수의 有給 選舉事務員 이외에는 실비보상을 금지하고,

여덟째,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경력방송,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등 주요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투·개표참관인수당 등에 대한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확대하여 선거운동의 公營制를 강화하였으며,

아홉째, 寄附行爲 制限期間을 선거일전 180日부터 선거일까지로 하여 선거기간중에는 일체의 寄附行爲를 제한하였으며 寄附行爲 制限對象도 확대하고,

열째, 평균선거비용 제한액을 大統領選舉 193億원, 市·道知事選舉 7億2000萬원, 地域區 國會議員選舉 5,700萬원, 區·市·郡의 長 選舉 5,600萬원, 市·道議會議員 選舉 1,

800萬원, 區·市·郡議會 議員選舉 1,100萬원 등으로 하여 선거비용의 算出基準을 법정화 하는 한편,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금융기관계좌를 통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열한째, 投票時間은 午前 6時부터 午後 6時까지로 1시간 연장을 하고,

열두째, 全國區國會議員選舉의 議席配分은 政黨의 得票比率에 따라 배분되되 全國區國會議員이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하였으며,

열세째, 同時選舉實施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열네째, 當選無效事由를 확대하여 選舉費用 制限額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選舉事務長 또는 會計責任者가 懲役刑을 선고받은 때 및 후보자의 直系 尊·卑屬 및 配偶者,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위반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懲役刑의 선고를 받은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였으며,

열다섯째, 일정한 選舉犯罪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중앙당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高等法院에 裁定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4個의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舉는 1995年6月27日 동시에 실시하되, 그 임기는 1998年6月30日까지로 하였습니다.

公職選舉및 選舉不正防止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提案說明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朴相千委員 나오셔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朴相千委員입니다.

밤 늦게 모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밤으로서 13대 國會 이래 끈질기게 추구해 온 政治改革의 큰 봉우리를 넘어 갑니다. 그중에 地方自治法에 대해서 간단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행의 市와 郡을 통합하거나 또는 人口 5萬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郡을 都農 複合形態의 市로 설치할 수 있도록 基礎自治團體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自治團體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條例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地方議會議員들의 議政活動을 돕기 위해서 議政活動費를 매월 지급하도록 했고 廣域議員에 대해서는 補助活動費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次期地方議員으로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國家委任事務와 市道の 事務에 대해서 國會나 市道議會가 직접 監査하기로한 事務 이외의 事務에 대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議會가 監査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國會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에 대한 오랜 분쟁을 立法的으로 해결했습니다. 地方議會의 行政事務監査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廣域議會는 10日동안 基礎議會는 7日이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行政監査를 하도록 하고 또 行政調查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虛偽證言을 한 자에 대해서는 선서를 시켜서 證言을 받기 때문에 刑法의 偽證罪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을 기피하거나 證言 陳述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地方議會의 監査를 명실상부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地方議會의 定期會와 臨時會의 회기를 늘려서 自治團體의 행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監査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特別市와 直轄市의 副市長과 道の 副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했고 그 경우에 한 사람은 國家公務員으로 또 한 사람은 地方公務員으로 해서 地方公務員은 自治團體長이 임명하고 國家公務員에 대해서는 地方自治團體長의 제정으로 大統領이 임명하되 그 재청된 사

람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으면 30日 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市郡自治區의 副市長 副郡守 副區廳長에 대해서는 一般職地方公務員에서 임명하도록 했으며 내년엔 선출되는 副市長과 副郡守에 대해서는 國家職으로 하고 이 경우에도 民選市長 民選郡守가 재청한 사람에게 法的 欠缺이 없는 이상 30日 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邑面洞長을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하되 현재 근무중인 邑面洞長의 기득권을 인정했습니다.

地方自治團體에 들어가 있는 國家公務員의 정원과 직급에 대해서 현재 大統領令으로 되어 있던 것을 法律로 정하도록 해서 地方自治團體의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紛爭調停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國家委任事務나 市道委任事務를 이유없이 해태할 때에는 履行命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履行命令이 되면 履行命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代執行할 수 있도록 하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大法院에 제소를 해서 그 履行命令의 당부를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內務部長官이나 市道知事가 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해서는 監査를 할 수 있도록 하되 自治事務에 관해서는 法令違反事項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자율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法에 의해서 최초로 선출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차기에 선출되는 基礎議員의 임기는 95年7月1日 부터 개시되도록 했습니다.

이 점은 유인물에 잘못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수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임기는 98年6月30日에 일제히 만료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姜信玉委員 나오셔서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信玉委員 姜信玉委員입니다. 政治資金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月15日 民主自由黨의 申相式議員外 171인과 동년 9月16日 民主黨의 朴相千議員外 95人으로부터 政治資金法中改正法律案이 각각 發議되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도 立法意見書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兩黨에서 發議한 두 法案은 政治資金을 양성화함으로써 政治資金 調達에 따른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달된 깨끗한 資金으로 政黨運營과 政治活動을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이 法 運營上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기본취지는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協商代表는 兩黨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협의의 한 결과 두 法案을 모두 폐기하고 하나의 法案으로 成案하여 오늘 委員會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法案의 합의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는 國會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에 한하여 地區黨後援會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國會交涉團體 構成與否에 관계없이 모든 政黨의 地區黨에 後援會의 구성을 허용하고 後援會의 會員數를 中央黨 後援會는 1,000名에서 2,000名으로, 市·道支部 後援會는 300名에서 500名으로, 地區黨과 國會議員後援會는 200名에서 300名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後援會 會員의 회비납부를 義務化함으로써 後援會가 實質的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後援會의 모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집회에 의한 모금과 광고에 의한 모금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던 것을 그 회수를 확대하여 平年에는 각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각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公職選舉期間중에는 1회에 한하도록 하는 한편 公職選舉日前 3月부터 選舉日까지는 金品募集을 위한 屋外集會를 금지하고 寄附制限期間 中에는 金品募集을 위한 집회에서 연예활동과 金品提供을 금지함으로써 不法墮落選舉를 방지하기 위한 制度的裝置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政治資金을 납입, 기부받을 後援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발급받은 政治

資金領收證을 교부토록 하고 國會議員後援會와 地區黨後援會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표시된 領收證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後援會의 募金活動을 活性化하였습니다.

넷째, 國庫補助金の 용도에 組織活動費, 宣傳費와 기타 政黨活動에 소요되는 經費를 추가하고 補助金 金額을 현행 選舉權者 1인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大統領選舉, 國會議員選舉 등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地方選舉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추가하여 計上함으로써 政黨에 대한 國家支援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지출과 경리상황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會計報告의 요건을 엄격히 하며 會計報告의 내용열람과 異議申請 등의 制度를 둬으로써 國庫補助金을 정당한 방법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政治資金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부조목 報告드린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黃潤祺委員, 朴相千委員, 姜信玉委員 提案說明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議決을 하고자 합니다.

議事日程 第1項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代案을 審査報告한 대로 國會法 第51條의 規定에 의거 當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고 民主自由黨 申相式議員外 171인이 發議한 公職者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과 民主黨 趙世衡議員外 95인이 發議한 公職選舉法案 및 朴相千議員外 94인이 發議한 公職選舉의同時實施에관한特例法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을 審査報告한 대로 國會法 第51條의 規定에 따라 當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고 民主黨 朴相千議員外 94인이 發議한 地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과 政府에서 提出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을 審査報告한 대로 國會法 第51條의 規定에 따라 當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고 民主自由黨 申相式議員外 171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과 民主黨 朴相千議員外 95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請願에 대한 報告와 함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鍾路區 이화동 121번지 서영훈의 3인이 姜信玉議員紹介로 提出한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 請願, 全南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 321번지 김말순의 5,491인이 朴正勳議員의 紹介로 提出된 國民投票制導入을 위한 地方自治法改正에 관한 請願, 그리고 光州直轄市 서구 월산5동 1015번지의 22 김웅현이 李吉載議員의 紹介로, 서울시 江東區 명일동 342번지의 23 이은수의 4,305인이 張基旭議員의 紹介로, 慶北 龜尾市 비산동 434번지의 1 이동영의 2,558인이 申溪輪議員의 紹介로, 忠南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8번지 이재광의 1,081인이 李富榮議員의 紹介로 選舉權者年齡下向調整을 위한 選舉法改正에 관한 請願을 같은 내용으로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6件의 請願에 대해서는 政治關係法 審議時 충분히 論議를 하였으며 상당부분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特委에서는 지난 定期國會時 公職者倫理法, 通信秘密保護法, 政黨法 및 國家安全企劃部法을 通過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政治資金法, 地方自治法 그리고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을 通過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政治史에 改革의 轉機를 마련하였습

니다.

그동안 政治關係法案을 審議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分野別로 公聽會를 開催하고 斯界의 專門家들로부터 意見을 聽取하였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長期間에 걸쳐 協商과 審査를 거듭한 결과 새로운 政治文化의 꽃을 피울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努力해 주신 委員 여러분에게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수고해주신 關聯部處 職員 여러분에게도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로써 散會를 宣布합니다.

(21時55分 散會)

○出席委員

申 相 式	姜 三 載	姜 信 玉
金 榮 駟	金 榮 珍	朴 燦 太
白 南 治	黃 潤 鎰	姜 秀 淋
朴 相 千	李 永 權	李 沅 衡
鄭 均 桓	曹 駟 鉉	車 秀 明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韓 世 東
立 法 審 議 官	朴 奉 國
立 法 審 議 官	申 世 華

○議案回附

- 公職者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案  
(2月17日 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 公職選舉法案  
(2月17日 趙世衡議員外 95人 發議)
  - 公職選舉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法案  
(2月17日 朴相千議員外 94人 發議)
  -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2月17日 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2月17日 朴相千議員外 95人 發議)
  -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2月17日 朴相千議員外 94人 發議)
  -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2月17日 政府提出)
- 이상 7件 2月17日字 回附

○請願回附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 請願  
(3月2日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21번지 서영훈의 3인으로부터 姜信玉議員의 紹

介로 提出)

國民投票制導入을 위한 地方自治法改正에 관한 請願

(3月2日 전남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  
321번지 김왕순외 5,491人으로부터 朴正  
勳議員의 紹介로 提出)

選舉權者年齡下向調整을 위한 選舉法改正에 관한 請願

(3月2日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5동 1015  
번지의 22 김용현으로부터 李吉載議員의  
紹介로 提出)

選舉權者年齡下向調整을 위한 選舉法改正에 관한 請願

(3月2日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42번지  
의 23 이은수외 4,305인으로부터 張基旭  
議員의 紹介로 提出)

選舉權者年齡下向調整을 위한 選舉法改正에 관한 請願

(3月2日 경북 구미시 비산동 434번지의  
1 이동영외 2,558인으로부터 申溪輪議員  
의 紹介로 提出)

選舉權者年齡下向調整을 위한 選舉法改正에 관한 請願

(3月2日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8  
번지 이재광외 1,081인으로부터 李富榮議  
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6件 3月2日字 回附